

공 시 송 달 공 고

2019년 11월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여 귀하(사)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이사감 · 주소불명 · 수취인부재 ·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01. 17.

보 령 시



1. 공고사항: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(2019년 11월 단속누락분)
2. 처분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3. 공고기간: 2020. 01. 17. ~ 2020. 01. 30.(14일간)
4. 공고내역: 붙임 참조
5. 기 타

가. 공시송달 공고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0년 01월 30일까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(☎041-930-3976)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처리 하겠으며.

나.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부과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대 75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납부의무자는 보령시청 도로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